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1년 1분기 축산관계자 현행화 관리 및 자진등록 지도 요청

1. 농식품부 검역정책과-602(2017.2.3.)호와 관련됩니다.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국 여행자(축산관계자 등)에 대하여 출입국 신고 및 검역조치(소독·교육 등)를 위한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가 상시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3. 이에 따라, 각 지자체 및 협회 등 현행화 주관기관(붙임1)에서는 축산관계자 현행화(퇴사,이직시 제외 처리 요망) 및 자진등록 대상 축산관계자에 대한 지도·홍보 등 현행화 정기 관리(연 4회 / 3월,6월,9월,12월)를 이행하여 주시고, 특히 가축사육업 등에 고용된 자(외국인 근로자 포함)들이 자진등록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가축의 소유자 등 고용주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도와 홍보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계자 현행화 관리 및 자진등록 지도 시 참고사항

- 자진등록 대상: 축산법인, 축산업 고용인(축산농가·동물약품 제조·사료판매업), 가축 분뇨수입 운반,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 등 수의·축산관련 업무에 종사하는자
- 가축사육업 폐업처리(새울시스템)시 시스템 연계로 국경검역관리시스템(BQMS)에 반영되어 제외 처리
- 새울시스템 미등록 사육업의 경우 축협(소), 축평원(돼지)에 폐업신고시 BQMS에 반영되어 제외 처리

- 붙임 1. 축산관계자 현행화 주관 기관별 정보 현행화 방법 1부.
2. 축산관계자 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 1부. 끝.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수신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검역정책과장), 서울특별시(동물보호과장), 광주광역시(생명농업과장), 울산광역시(농축산과장), 강원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기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경상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동물방역과장), 세종특별자치시(농업축산과장), 대구광역시(농산유통과장), 인천광역시(농축산유통과장), 대전광역시(농생명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전라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부산광역시(농축산유통과장), 전라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사단법인 한국축산물처리협회, 대한수의사회, 한국사료협회, (사)한국단미사료협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무관	조영호	수의사무관	전관용	동물검역과장	전결 2021. 3. 8. 백현
협조자					
시행	동물검역과-2441	(2021. 3. 8.)	접수		
우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77 (울곡동)	/ http://www.qia.go.kr		
전화번호	054-912-0426	팩스번호	054-912-0431	/ boss2333@korea.kr	/ 비공개(5)